

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69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10.15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법제처로부터 안산시 조례 정비과제로 통보된 개선의견과 2015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가. 법제처의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반영 (안 제1조, 안 제2조)

- 제1조(목적) 「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문구 삭제
- 불분명한 “안산시 산하기관”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

나. 재계약 또는 재위탁 시 의회동의 사항 신설 (안 제4조)

- 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한다”는 사항 신설

개정조례안 : 불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불임3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있음(불임4)

- 입법예고 : 2015. 9. 18. ~ 2015. 10. 8.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불임5
- 방침결정문 : 불임6

< 붙임 1 >

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에 의하여 안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·공단이나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·출연기관 등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,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안산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 산하기관” 을 “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공단이나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·출연기관 등(이하 “산하기관” 이라 한다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시 산하기관” 을 “안산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 산하기관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민간위탁사무” 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.
4. “재위탁” 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
5. “재계약” 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

제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위탁사무” 를 “민간위탁사무” 로 한다.

- ④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제6조제1호, 제8조제1항, 제11조제2항, 제12조제2항,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제2호 중 “위탁사무” 를 각각 “민간위탁사무” 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총무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총무과장 최종은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조직교육계장 허진
	담당자 성명·전화	강연찬 (행정 2118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및 「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에 의하여 안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안산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,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에 의하여 안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·공단이나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·출연기관 등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,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민간위탁”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2. “수탁기관”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</p> <p>1. ----- ----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·공단이나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·출연기관 등(이하 “산하기관”이라 한다)----- -----</p> <p>2. -----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산하기관-----</p> <p>3. “민간위탁사무”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.</p> <p>4. “재위탁”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5. “재계약”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(생략)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적격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</p> <p>1.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, 기구, 장비, 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제8조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)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~ ⑦ (생략)</p> <p>제11조(위탁기간의 연장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,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 그 결과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12조(수탁기관의 의무) ① (생략)</p> <p>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사무의 지연처리,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,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</p> <p>⑤ --- 민간위탁사무 ---</p> <p>제6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민간위탁사무-----</p> <p>-----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<u>민간위탁사무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위탁기간의 연장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민간위탁사무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수탁기관의 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민간위탁사무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5조(사용료 징수 등) ①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·수수료·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5조(사용료 징수 등) ① -- 민간위탁사무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6조(위탁의 취소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</p> <p>3. ~ 6. (생략)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16조(위탁의 취소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민간위탁사무----- -----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698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5. 10. 29.

제안자 : 기획행정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민간위탁 사무는 10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정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, “재위탁 또는 재계약”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하도록 함.
- 우수한 법인이나 기관 등의 경쟁을 유도하여 공공서비스의 양적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재계약의 횟수를 제한함.

□ 주요골자

- 10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정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. (안 제4조 제3항)
-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. (안 제4조 제4항)
-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11조 제3항)

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 제3항의 “사전에” 를 앞에 “10년이내의 위탁기간을 정하여” 를 삽입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민간위탁사무는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11조 “제3항” 을 “제4항” 으로 하고,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재계약은 1회에 한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~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시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<u>사전에</u> 안산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제5조제9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11조(위탁기간의 연장) ① ~ ②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③ 위탁기간의 연장방법과 절차, 기준 등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.</p>	<p>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~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</u>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<u>같음한다.</u></p> <p>⑤ (현행 ④항과 같음)</p>	<p>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~②(원안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<u>10년</u>이내의 위탁기간을 정하여 <u>사전에</u> ----- -----</p> <p>④ <u>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민간위탁사무는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⑤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11조(위탁기간의 연장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재계약은 1회에 한한다.</u></p> <p>④ (<u>현행 제3항과 같음</u>)</p>